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8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박해철 · 김남희 · 박 정
송옥주 · 이연희 · 박균택
한민수 · 전현희 · 김정호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 및 사업주를 포함하여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사항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